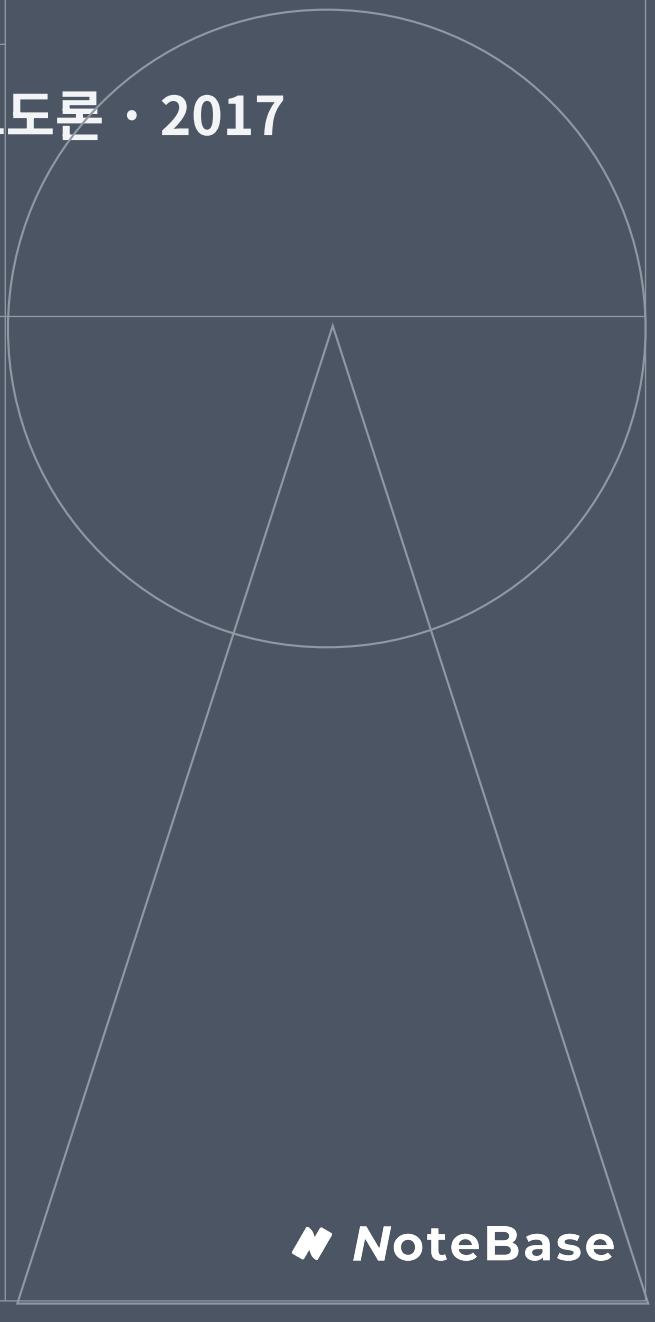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취재보도론 · 2017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취재보도론 · 2017

공무원/국회직/9급 · 취재보도론 · 2017

1. 다음 중 역피라미드형 기사의 서술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의 기사작성 방식이다.
② 뉴스를 시간 순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보의 중요도 순으로 배열하는 방식이다.
③ 스트레이트 기사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다.
④ 보통 리드(lead)문→중요 보충사실→추가 정보→세부사실의 순으로 작성한다.
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불완전하고 값비싼 전신에 의존하면서 생겨난 방식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역피라미드형 기사의 핵심 원리인 중요도 순 배열과 전통적인 서론·본론·결론식 구성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역피라미드형은 가장 중요한 결론과 핵심 사실을 리드에 먼저 제시하고, 뒤로 갈수록 덜 중요한 보충 정보와 세부 사실을 배치하는 기사 서술 방식이다. 전통적인 서론·본론·결론식 글이 결론을 뒤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역피라미드형은 독자가 첫 부분만 읽어도 뉴스의 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역피라미드형은 결론과 핵심 사실을 앞세우고 중요도가 낮은 정보로 내려가는 방식이다.
② O — 사건의 시간 순서가 아니라 사실의 중요도 순서에 따라 내용을 배열한다.
③ O — 핵심 정보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이다.
④ O — 일반적으로 리드에서 핵심을 제시한 뒤 중요 보충 사실, 추가 정보, 세부 사실의 순으로 배치한다.
⑤ O — 미국 남북전쟁 당시 불완전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전신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송신이 끊겨도 핵심 내용이 먼저 전달되도록 중요한 사실부터 쓰면서 발달한 방식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서론, 본론, 결론'은 일반적인 완결형 글의 구성과 역피라미드형을 혼동하게 만드는 표현이다.
역피라미드형의 '결론'은 글 끝이 아니라 리드에 놓인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역피라미드형 선지는 '시간 순서인가, 중요도 순서인가'와 '핵심이 앞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요도 순이며 리드에 결론과 핵심 사실이 먼저 나오면 역피라미드형의 특징에 해당한다.

암기 포인트

역피라미드형은 핵심부터, 시간 순이 아니라 중요도 순이다.

NoteBase

2. 다음 중 방송보도에서 숫자 읽기가 옳은 것은?

① 남자 58살 → "남자 오십팔살"
② 여의도동 188번지 → "여의도동 일팔팔 번지"
③ 에어버스 A380 여객기 → "에어버스 에이 삼백팔십 여객기"
④ 수돗물 300M³ → "수돗물 삼백 입방 미터"
⑤ 육상 100미터 경주 → "육상 일백 미터 경주"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방송에서 숫자를 읽을 때 숫자의 쓰임에 따라 고유어와 한자어를 구별하고, 수 전체의 값으로 읽을지 숫자를 한 자리씩 읽을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나이는 고유어 수사로 읽고, 번지는 수 전체의 값으로 읽는다. 항공기 기종명처럼 문자와 숫자가 결합한 명칭의 숫자는 한 자리씩 읽는다. 단위가 붙은 수는 수 전체의 값으로 읽되, 100은 '일백'이 아니라 '백'으로 읽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58살'을 '오십팔 살'로 읽은 부분이 틀렸다. 나이는 고유어 수사를 써서 '남자 쉰여덟 살'로 읽는다.

② X
'188번지'를 '일팔팔 번지'로 읽은 부분이 틀렸다. 번지는 수 전체의 값으로 읽으므로 '여의도동 백팔십팔 번지'로 읽는다.

③ X
기종명 'A380'의 숫자를 '삼백팔십'으로 읽은 부분이 틀렸다. 문자와 숫자가 결합한 항공기 기종명은 숫자를 한 자리씩 읽어 '에어버스 에이 삼팔공 여객기'로 읽는다.

④ O
부피 $300m^3$은 수 전체의 값과 세제곱 단위를 밝혀 '수돗물 삼백 입방미터'로 읽으므로 옳다.

⑤ X
'100미터'를 '일백 미터'로 읽은 부분이 틀렸다. 100은 맨 앞의 '일'을 드러내지 않고 '육상 백 미터 경주'로 읽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같은 아라비아 숫자라도 모두 자리값대로 읽는 것이 아니다. ①은 나이에 한자어 수사를 쓴 점, ②는 번지를 낱자리로 읽은 점, ③은 기종명을 자리값으로 읽은 점, ⑤는 100 앞의 '일'을 불필요하게 읽은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숫자가 나이인지, 주소의 번지인지, 문자와 결합한 명칭인지, 단위가 붙은 양인지 확인한다. 그다음 나이는 고유어, 번지와 양은 수 전체의 값, 기종명은 숫자 한 자리씩이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58살은 '쉰여덟 살', 188번지는 '백팔십팔 번지', A380은 '에이 삼팔공', 100미터는 '백 미터'이다.

NoteBase

3. 다음 중 초상권 침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초상권은 사람의 얼굴뿐만 아니라 특정인임을 인지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보호하는 권리다.

②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보도했다 하더라도 타인이 인지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③ 학교장의 동의 아래 학교 행사에 참여 중인 초등학생의 모습을 촬영 보도했을 경우 언론은 법적 책임이 없다.

④ 일반적으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촬영할 때는 참가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⑤ 일단 동의를 받고 촬영한 영상이라도 다른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언론의 촬영·보도 과정에서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는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촬영 동의와 공표·이용 동의를 구별하고, 얼굴을 가렸더라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그 밖의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인격권이다.

핵심 구분

촬영에 동의했다고 해서 모든 공표와 2차 이용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다. 공표의 목적·방법·매체가 동의 당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면 별도의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또한 모자이크 여부 자체보다 주변 사람이 그 인물을 알아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대법원 판례도 얼굴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보호 대상으로 보고, 촬영 동의와 공표 동의의 범위를 구별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국회직/9급 · 취재보도론 · 2017

선지별 해설

① O
- 초상권은 얼굴에만 한정되지 않고, 체형·복장·행동 등과 결합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도 보호한다.

② O
- 모자이크를 했더라도 체형, 복장, 장소, 주변 정황 등으로 타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모자이크 실시 여부가 아니라 식별 가능성이다.

③ X
- 학교장의 동의는 학교 행사 취재에 대한 허락일 뿐, 촬영된 초등학생 개인의 초상권에 관한 동의를 당연히 대신하지 않는다. 학생이 식별되는 모습이 적법한 동의 없이 촬영·보도되었다면 언론에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틀린 표현: '언론은 법적 책임이 없다'
- 올바른 표현: 학교장의 동의 아래 촬영했더라도 학생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적절한 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학생의 모습을 보도하면 언론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④ O
- 집회나 시위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공적 행사의 전체 모습이나 참가 장면을 통상적인 보도 범위에서 촬영하는 경우에는 참가자마다 개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특정 개인을 부각하거나 사생활을 과도하게 공개하는 등 보도의 필요 범위를 벗어나면 별도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⑤ O
- 촬영 동의는 정해진 목적과 이용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다. 동의를 받아 촬영했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다른 프로그램에 활용하면 새로운 공표·이용에 해당하여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의 함정은 '학교 행사 촬영 허가'와 '학생 개인의 초상 이용 동의'를 같은 것으로 보는 데 있다. 학교장이 행사 취재를 허락했다는 사실만으로 학생 개인의 초상권이 소멸하거나 언론의 책임이 언제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초상권 문항에서는 먼저 얼굴을 가렸는지가 아니라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를 본다. 다음으로 촬영, 공표, 다른 목적의 재이용을 각각 나누어 동의가 있었는지와 그 범위 안의 이용인지를 판단한다. 공개 행사 보도는 공익성·공개성·촬영 방법·개인 부각 정도를 함께 살핀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초상권은 '식별 가능성'이 핵심이고, 촬영 동의와 공표·재이용 동의는 별개이다.

NoteBase

4. 취재 도중 기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석에서 공인과 나눈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뒤 보도에 사용했더라도 그 내용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거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면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취재 차 방문한 기관이나 회사의 담당자가 업무방해를 주장하며 나가라고 하는데 기자가 불응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③ 미술품 전시 소식을 스케치 형태로 다루면서 전시된 그림 몇 점을 뉴스로 내보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예술·체육 행사 등에 취재 목적이라 하더라도 5만 원이 넘는 티켓을 무료로 제공받아 공연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위반에 해당한다.

⑤ 기자가 신분을 속이고 취재(위장취재)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사안의 긴급성, 법익의 형평성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적 처벌의 대상이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취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퇴거불응, 저작권 제한, 청탁금지법 및 위장취재의 법적 한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취재 목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이 인정하는 보도 목적의 이용이나 사회상규상 예외도 있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프레스티켓 = 문화·예술·체육 분야 기자가 취재와 기사 작성을 위해 본인에게 발급받는 취재용 입장권이다.
위장취재 = 기자가 신분이나 취재 목적을 드러내지 않거나 다른 신분을 가장하여 정보를 얻는 취재 방식이다.

핵심 구분

취재행위의 위법성은 행위별로 판단한다. 보도 목적과 공익성은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까지 당연히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다만 저작권법은 시사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을 보도에 필요한 정당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탁금지법상 취재 목적의 프레스티켓은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고 양도·대여되지 않는다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프레스티켓은 가격이 5만 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대화 당사자인 기자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와 다르다. 보도 내용이 그 공인의 업무와 관련되거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면 사생활 보호보다 알 권리와 보도의 공익성이 우선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② O
- 기관이나 회사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적법한 관리자가 퇴거를 요구했는데도 기자가 응하지 않으면 형법상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다. 업무방해라는 주장만이 아니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확한 퇴거 요구와 이에 대한 불응이 판단의 핵심이다.

③ O
- 저작권법은 시사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을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에서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한다. 전시 소식을 전하면서 전시 작품 몇 점을 보도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여 주는 것은 이러한 제한 규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④ X
- 문화·예술·체육 분야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공연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프레스티켓을 제공받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상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티켓 가격이 5만 원을 넘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 틀린 표현: "5만 원이 넘는 티켓을 무료로 제공받아 공연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 올바른 표현: 취재 목적의 프레스티켓이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고 실제 취재에 사용된다면 5만 원을 넘더라도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으며, 양도·대여 등 사적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O
- 신분을 속이는 위장취재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사기·주거침입 등 개별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사안의 긴급성, 법익의 균형성 등 정당화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오답 포인트

④의 함정은 일반적인 선물 가액기준을 취재용 프레스티켓에 그대로 적용한 데 있다. 개인적 향응으로 받은 일반 티켓과, 취재·기사 작성을 위해 기자 본인에게 발급된 프레스티켓은 구별해야 한다. 또한 ③의 저작권 제한과 ⑤의 위장취재 정당화 가능성도 각각 정당한 범위와 엄격한 요건 안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취재행위를 녹음, 출입·퇴거, 저작물 이용, 금품 수수, 신분 가장으로 나눈다. 그다음 각 행위에 적용되는 법적 원칙을 확인하고, 보도 목적의 정당한 범위나 사회상규 같은 예외가 있는지를 따진다. 금액이나 취재 목적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목적, 방법, 필요성, 사용 범위를 함께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취재용 프레스티켓은 일반 선물과 다르다. 본인 취재용이고 사회상규에 맞으면 5만 원 초과만으로 위반이 되지 않는다.

NoteBase

5. 기자가 기사화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기사가치 혹은 뉴스밸류라 한다. 다음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사가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시의성
② 저명성
③ 흥미성
④ 근접성
⑤ 공정성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기사로 다룰 만한 사건을 고르는 기사 가치의 기준과, 기사를 균형 있게 작성하는 보도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사 가치는 어떤 사건이 보도할 만한 중요성과 관심도를 지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시의성은 새롭고 때에 맞는 정도, 저명성은 유명 인물·기관과 관련된 정도, 흥미성은 독자의 관심을 끄는 정도, 근접성은 독자와 지리적·심리적으로 가까운 정도를 뜻한다. 반면 공정성은 특정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보도해야 한다는 취재·보도의 윤리적 원칙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시의성은 사건이 얼마나 최근에 발생했거나 현재의 관심사와 맞닿아 있는지를 나타내므로 일반적인 기사 가치에 포함된다.
② O — 저명성은 유명 인물이나 영향력 있는 기관과 관련된 사건일수록 독자의 주목을 더 받는다는 기사 가치이다.
③ O — 흥미성은 사건이 독자의 호기심과 관심을 얼마나 끄는지를 나타내므로 기사 가치에 포함된다.
④ O — 근접성은 사건이 독자의 생활권이나 심리적 관심과 가까울수록 기사 가치가 커진다는 기준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공정성'이다. 공정성은 사건의 보도 가치를 판별하는 일반적 기사 가치가 아니라, 사실과 여러 관점을 치우침 없이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취재·보도의 윤리적 원칙이다.

오답 포인트

공정성도 좋은 기사에 필요한 요소이므로 기사 가치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시의성·저명성·흥미성·근접성은 '무엇을 기사로 선택할 것인가'의 기준이고, 공정성은 '선택한 사건을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의 원칙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해당 요소가 사건의 보도 가능성과 주목도를 높이는 조건이면 기사 가치로, 취재와 기사 작성의 바람직한 태도를 규정하면 보도 윤리 원칙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기사 가치는 무엇을 보도할지, 공정성은 어떻게 보도할지에 관한 기준이다.

NoteBase

6. 다음은 언론의 취재 보도 관행 중 '엠바고(embargo)'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설명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엠바고란 보도를 일정 시점 이후로 제한하는 '시한부 보도유예'를 의미한다.

ㄴ. 기자단에서 기자들 간의 합의 혹은 출입처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ㄷ. 엠바고는 언론이 자체적으로 해당 사안을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

ㄹ. 보도가 피해자 도주, 증거인멸 등 공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될 수 있다.

ㅁ. 엠바고를 지키지 않은 기자는 법률적으로도 책임을 추궁 당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ㄴ, ㄷ,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엠바고의 의미, 성립 방식, 취재상 기능, 적용 사유와 법적 구속력의 한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엠바고는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언론이 합의된 시점까지 보도하지 않는 시한부 보도유예이다. 기자단의 합의나 출입처의 요청을 바탕으로 성립할 수 있으며, 언론에 사안을 분석하고 사실을 확인할 시간을 준다. 또한 피해자 도주나 증거인멸처럼 조기 보도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엠바고 자체는 통상 언론과 취재원 사이의 자율적 약속이므로, 이를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ㄱ, ㄴ, ㄷ, ㄹ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옳지만 ㄴ, ㄷ, ㄹ도 모두 옳으므로 정답의 범위가 부족하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 ㄹ이다.
② X — ㄴ과 ㄷ은 옳지만 시한부 보도유예라는 ㄱ과 공익상 필요에 관한 ㄹ을 빠뜨렸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 ㄹ이다.
③ X — ㄴ과 ㄷ은 옳지만 ㅁ을 포함한 점이 틀렸고 ㄱ과 ㄹ도 빠졌다. '엠바고 위반만으로 법률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엠바고 자체는 자율적 약속이므로 위반만으로 곧바로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옳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 ㄹ이다.
④ O — ㄱ은 엠바고의 뜻, ㄴ은 성립 방식, ㄷ은 취재상 기능, ㄹ은 공익상 활용 사유를 각각 바르게 설명한다. 옳은 설명을 모두 포함한 조합이다.
⑤ X — ㄱ, ㄴ, ㄷ, ㄹ은 옳지만 ㅁ까지 포함한 점이 틀렸다. '엠바고를 지키지 않은 기자는 법률적으로도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엠바고 위반 자체에는 통상 법적 책임이 따르지 않으며 기자단 내부의 제재나 취재 제한 등이 문제 될 수 있다'가 옳다.

오답 포인트

ㅁ의 '법률적으로도'라는 표현이 함정이다. 엠바고 위반에 직업윤리상 비판이나 기자단 차원의 제재가 따를 수 있다는 점과, 위반 자체로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엠바고 관련 선지는 '일정 시점까지의 보도유예', '합의·요청에 의한 성립', '분석·확인 시간 확보', '공익 보호를 위한 활용'이면 옳다고 판단한다. 엠바고 자체에 당연한 법적 구속력이나 위반 책임을 부여하면 틀린 설명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엠바고는 시한부 보도유예이자 자율적 약속이다. 합의·확인·공익은 O, 위반 자체의 법적 책임은 X이다.

NoteBase

7. 다음 사례 중 객관성 원칙에서 벗어난 기사 문장은?

①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김모씨는 “탄핵은 무효다”라고 말했다.
② 애국보수단체 소속 정치인과 민주 인사들 40여 명이 이 날 행사에 함께 참석했다.
③ 김아무개 의원은 다른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뭐 그리 대단한 잘못도 아니네”라고 대답했다.
④ 청문회에 출석한 김 장관에 대해 박 의원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해?”라고 했다.
⑤ ‘구국결사대’를 자처한 청년들이 시청청사를 점거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기사의 객관성 원칙에 비추어 사실·출처가 드러난 인용과 기자가 직접 붙인 평가적 표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객관성 원칙은 기자의 주관적 가치판단을 사실처럼 제시하지 않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며, 의견이나 주장을 보도할 때 그 발언의 주체와 출처를 분명히 밝히는 원칙이다.
직접 인용은 발언자에게 주장의 책임을 돌리는 방식인 반면, 출처 없이 ‘애국’, ‘민주’처럼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명칭은 기자의 평가가 기사 문장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탄핵은 무효다’라는 주관적 주장을 김 모 씨의 직접 인용으로 명확히 귀속했다. 이를 기자 자신의 판단이라고 보는 것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발언자의 견해를 출처와 함께 전달한 문장이다.
② O — ‘애국보수단체’와 ‘민주 인사’는 각 집단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평가적 명칭인데도 인용이나 출처 표시 없이 기자의 서술로 제시되었다. 객관적으로 쓰려면 확인 가능한 공식 소속·직책이나 중립적 표현으로 바꾸고, 해당 명칭이 누군가의 평가라면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③ X — ‘뭐 그리 대단한 잘못도 아니네’라는 평가는 김아무개 의원의 말로 직접 인용되어 발언 주체가 분명하다. 이 표현을 기자의 논평이라고 보는 것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김 의원의 반응을 출처와 함께 보도한 문장이다.
④ X —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해?’라는 비판은 박 의원의 직접 인용으로 제시되어 발언 주체가 분명하다. 이를 기자의 평가라고 보는 것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박 의원의 발언을 귀속해 전달한 문장이다.
⑤ X — ‘구국결사대’는 따옴표로 표시된 자칭 명칭이고, 청년들이 시청청사를 점거했다는 행위를 사실 문장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를 기자가 청년들을 구국 세력으로 평가한 표현이라고 보는 것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자칭 명칭과 확인된 행위를 구분해 서술한 문장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③·④의 발언 내용은 강한 주장이나 비난이지만, 발언자가 명시된 직접 인용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반대로 ②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참석자 소개이지만 '애국'과 '민주'라는 가치평가를 기자가 출처 없이 붙였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에 주관적 표현이 보이면 먼저 누가 한 말인지 확인한다. 발언자가 밝혀진 인용은 그 사람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지만, 출처 없이 기자의 서술에 평가적 수식어가 들어가면 객관성 위반 가능성이 크다.

암기 포인트

인용은 발언자에게 귀속하고, 평가는 출처를 밝히며, 기자의 사실 서술에는 가치판단을 섞지 않는다.

NoteBase

8.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법은?

①「저작권법」
②「개인정보보호법」
③ 퍼블리시티권
④「청탁금지법」
⑤「정보공개법」

정답 5번

쟁점

이 문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을 식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는 법과 저작물·개인정보·초상 등의 상업적 가치·부정청탁을 규율하는 제도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핵심 구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와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를 규정한다. 이 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참여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문제의 설명은 약칭인 「정보공개법」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저작권법」은 저작물과 저작자의 권리 등을 보호하는 법이므로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공개 청구를 규율하는 법이 아니다.
틀린 표현: 「저작권법」
올바른 표현: 문제의 설명에 해당하는 법은 「정보공개법」이다.

② X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국민의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권을 직접 정한 법이 아니다.
틀린 표현: 「개인정보보호법」
올바른 표현: 문제의 설명에 해당하는 법은 「정보공개법」이다.

③ X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성명·초상 등이 지닌 상업적 가치를 통제하는 권리 개념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를 정한 법률명이 아니다.
틀린 표현: 퍼블리시티권
올바른 표현: 문제의 설명에 해당하는 법은 「정보공개법」이다.

④ X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법으로,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공개 청구 절차와 공개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 아니다.
틀린 표현: 「청탁금지법」
올바른 표현: 문제의 설명에 해당하는 법은 「정보공개법」이다.

⑤ O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다. 문제에 제시된 공개 청구,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 국민의 알권리, 국정 참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모두 이 법의 목적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정보’라는 단어만 보고 ②의 개인정보 보호와 혼동하기 쉽다.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의 오용과 침해를 막는 데 초점이 있고,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국민의 공개 청구’, ‘알권리’,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함께 제시되면 「정보공개법」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공공기관 정보 + 공개 청구 + 알권리 + 국정 투명성 = 정보공개법이다.

NoteBase

9. 언론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이 아닌 것은?

① 개인의 공간을 물리적으로 침입하거나 엿보거나 엿듣는 행위
② 사전허락을 받지 않고 개인의 의료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공개적으로 유통시키는 행위
③ 공직자의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유통시키는 행위
④ 사인에 관해 일반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사실을 공표 하는 행위
⑤ 개인의 이름이나 사진을 사전 허락 없이 상업적인 목적에 사용 하는 행위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언론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인 사적 영역 침입, 사적 사실의 공개, 오해를 낳는 공표, 성명·초상의 무단 이용을 구별하고,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적 영역 침입은 타인의 사적 공간이나 생활에 물리적·기술적으로 함부로 들어가거나 엿보는 행위이다.
사적 사실의 공개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아닌 개인의 은밀한 사실을 동의 없이 널리 알리는 행위이다.
오해를 낳는 공표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잘못 결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릇된 인상을 형성하게 하는 행위이다.
성명·초상의 무단 이용은 개인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동의 없이 광고·상품 판매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이다.
공직자의 사생활이라도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공적 평가에 필요한 내용은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개인의 공간을 물리적으로 침입하거나 엿보거나 엿듣는 행위는 사적 영역 침입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이다.
② O — 의료기록과 같은 사적인 정보를 사전 허락 없이 공개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사적 사실의 공개에 해당한다.
③ X — 틀린 부분은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사생활'을 공개한 행위를 곧바로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으로 본 점이다. 공직자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사생활은 공적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올바르게는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순수한 사생활을 정당한 공익 없이 공개적으로 유통하는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다.
④ O —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그 내용이 당사자에 관하여 일반인에게 잘못된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면 오해를 낳는 공표에 해당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이다.
⑤ O — 개인의 이름이나 사진을 사전 허락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성명·초상의 무단 이용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③에는 '사생활'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판단의 핵심은 그 내용이 공무수행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인지 여부이다. 단순히 사생활을 공개했다는 형식만 보고 침해라고 판단하면 함정에 빠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행위의 모습을 기준으로 '침입·엿보기', '은밀한 사실 공개', '잘못된 인상 형성', '이름·사진의 상업적 이용'으로 먼저 분류한다. 공개형 선지에서는 이어서 공적 관심사인지, 특히 공직 수행과 관련되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침입, 사적 사실 공개, 오해를 낳는 공표, 성명·초상 이용은 침해 유형이고, 공무수행 관련 정보는 공적 관심사 여부가 핵심이다.

NoteBase

10. 보도자료 취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되도록 보도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한다.
② 보도자료를 기초로 발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나 반응 등과 같은 추가적인 뉴스거리를 취재한다.
③ 선전적인 인용이나 정보에 주의한다.
④ 부족한 정보에 의문을 가지고 의심이 가는 정보와 절차 등을 확인한다.
⑤ 뉴스가치가 높은 사안들을 가려내 보도하여야 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보도자료는 취재의 출발점이자 참고 자료일 뿐이므로, 내용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검증·보완하여 보도해야 한다는 원칙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보도자료 취급 원칙: 보도자료의 주장과 수치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추가 취재와 교차 검증을 거쳐 뉴스가치가 있는 내용을 선별하여 보도하는 것이다.
보도자료 활용과 보도자료 전재의 차이: 보도자료 활용은 취재의 단서로 삼는 것이고, 전재는 내용을 검증 없이 그대로 옮기는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보도자료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기면 제공자의 일방적 관점이나 오류까지 전달할 수 있어 오히려 정보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다. 올바르게는 보도자료의 사실관계와 출처를 확인하고 추가 취재로 보완하여 사용해야 한다.
② O — 보도자료를 단서로 새로운 관점, 관련자의 반응, 후속 쟁점 등 추가적인 뉴스거리를 취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③ O — 보도자료에는 제공 기관이나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선택적으로 인용되거나 편향된 정보가 아닌지 주의해야 한다.
④ O — 정보가 부족하거나 의심스러우면 관련 자료, 취재원, 사실 확인 절차 등을 통해 진위를 교차 검증해야 한다.
⑤ O — 보도자료의 모든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성·시의성·영향성 등 뉴스가치를 따져 보도할 사안을 선별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여 목적과 방법을 뒤바꾸었다. 신뢰성은 원문을 그대로 옮겨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과 추가 취재를 거쳐 확보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도자료 관련 선지는 '그대로 사용·무비판적 인용'이면 부적절하고, '출처 확인·교차 검증·추가 취재·뉴스가치 선별'이면 적절한 원칙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보도자료는 완성된 기사가 아니라 취재의 단서이다. 그대로 전재하지 않고 검증하고 보완한다.

NoteBase

11. 다음 중 사건·사고 기사 작성 시 유의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의 주장도 반론권을 인정해 양측의 주장을 기사 속에 균형 있게 포함시키려고 노력한다.

② 수사당국의 공식 기록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은폐나 왜곡 등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

③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용의자, 범인의 가족 및 주변 인물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④ 법원의 판결이나 공적기관의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와 논평은 삼간다.

⑤ 범죄 수법 등 모방범죄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요 이상으로 범죄수단이나 방법을 상세하게 묘사하거나 재연하는 것을 삼간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사건·사고 기사 작성에서 공정성, 사실 확인, 사생활 보호,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 방지, 모방범죄 예방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건·사고 보도는 공익을 위해 사실을 전달하되,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개인의 신상과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과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범죄를 모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알권리는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상세히 공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피의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을 함께 다루려는 태도는 한쪽 입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보도에 해당한다.

② O
수사당국의 공식 기록도 누락이나 왜곡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자료와 취재를 통해 사실관계와 맥락을 교차 확인해야 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용의자, 범인의 가족 및 주변 인물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는 표현이다. 알권리를 이유로 사건과 무관한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올바르게는 사건과 직접 관련되고 공익상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제공하며, 가족과 주변 인물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④ O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단정하거나 여론재판을 유도하는 보도는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⑤ O
범죄 수단이나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상세히 묘사하거나 재연하면 모방범죄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구체적 전달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적 표현을 앞세워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상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든 선지이다. 알권리보다 공개 범위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관련성과 공익상 필요성을 충족하는 범위인지 함께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건·사고 보도 선지는 정보의 사건 관련성, 공익상 필요성, 공개 범위의 최소성, 재판·수사에 미치는 영향, 모방 가능성을 차례로 확인한다. 무관한 신상 공개나 불필요하게 상세한 범죄 방법 묘사는 부적절한 보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사건 보도는 균형 있게 확인하고, 사생활은 최소 공개하며, 재판 영향과 모방범죄는 막는다.

NoteBase

12. 뉴스기사는 기자, 에디터, 편집자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택된다. 저널리즘에서 이러한 과정을 지칭하는 말은?

① 데스킹
② 게이트키핑
③ 레이아웃
④ 뉴스밸류
⑤ 삼각확인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뉴스가 취재·편집 조직의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선택되거나 배제되는 과정을 게이트키핑이라고 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게이트키핑: 수많은 사건과 정보 가운데 보도할 내용을 선택하고, 보도의 비중과 형태를 결정하는 뉴스 생산 과정이다. 기자뿐 아니라 데스크와 편집자 등 여러 게이트키퍼의 판단이 작용한다.
데스킹은 데스크가 기사를 검토·수정하는 편집 업무이고, 레이아웃은 지면 요소를 배치하는 작업이다.
뉴스밸류는 어떤 사건의 보도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삼각확인은 복수의 출처나 방법으로 사실을 교차 검증하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데스킹은 데스크가 기사의 내용과 표현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편집 작업이다. 여러 단계에서 뉴스가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전체 과정이라는 표현은 게이트키핑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게이트키핑은 기자, 에디터, 편집자 등 여러 주체가 뉴스의 선택·배제와 비중을 결정하여 최종 보도물을 만드는 과정이다.
③ X — 레이아웃은 기사, 제목, 사진 등의 위치와 크기를 지면이나 화면에 배치하는 작업이다. 뉴스가 여러 관문을 거쳐 선택되는 과정이라는 표현은 게이트키핑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뉴스밸류는 시의성, 영향성, 근접성 등 사건이 뉴스로 보도될 만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뉴스 선택의 다단계 과정 자체를 가리키는 말은 게이트키핑이다.
⑤ X — 삼각확인은 서로 다른 출처·자료·방법을 활용하여 사실을 교차 검증하는 방식이다. 기자와 편집자가 단계적으로 뉴스를 선택하는 과정이라는 표현은 게이트키핑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데스킹과 레이아웃도 뉴스 제작 과정에 포함되므로 게이트키핑과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 표현은 '다양한 단계'와 '최종적으로 선택'이며, 이는 개별 편집 작업이 아니라 뉴스의 선택·배제 과정 전체를 가리킨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도할 정보가 여러 관문에서 선택·배제된다는 설명이면 게이트키핑으로 판단한다. 기사 검토·수정은 데스킹, 지면 배치는 레이아웃, 보도 가치의 판단 기준은 뉴스밸류, 복수 근거에 의한 교차 검증은 삼각확인으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선택은 게이트키핑, 검토·수정은 데스킹, 배치는 레이아웃, 가치는 뉴스밸류, 교차 검증은 삼각확인이다.

NoteBase

13. 다음 중 의미 전달에 혼선과 잘못이 없는 문장은?

① 이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② 이 분이 김두환이라는 소설을 쓰는 사람이다.
③ 영식이는 나처럼 만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④ 끈질긴 진실과 허위를 가려내기 위한 싸움에서 승리했다.
⑤ 영환 군은 빵과 술을 마셨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문장 성분의 수식 범위와 서술어의 호응이 분명하여 의미가 하나로 전달되는 문장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의미 전달이 정확한 문장은 수식어가 꾸미는 대상, 부정이나 비교가 미치는 범위,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명확한 문장이다.
수식 범위의 중의성은 한 표현이 둘 이상의 성분을 꾸미는 것으로 해석되는 현상이고, 호응 오류는 함께 묶인 말들이 하나의 서술어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현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이것'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의견이라는 뜻으로 문장 성분의 관계와 의미가 자연스럽다.

② X — '김두환이라는'이 사람의 이름인지 소설의 제목인지 분명하지 않다. 사람의 이름을 뜻한다면 '이분은 김두환이라는 사람으로, 소설을 쓴다.'라고 고치는 것이 명확하다.

③ X — '나처럼'이 '나도 만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내가 좋아하는 정도만큼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모호하다. 전자의 뜻이라면 '나와 마찬가지로 영식이도 만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고치는 것이 명확하다.

④ X — '끈질긴'이 '진실'을 꾸미는지 '싸움'을 꾸미는지 수식 범위가 모호하다. '진실과 허위를 가려내기 위한 끈질긴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고치면 '끈질긴'이 '싸움'을 꾸민다는 점이 분명하다.

⑤ X — '빵과 술'을 하나의 목적어로 묶어 '마셨다'와 호응시켰으므로 빵까지 마신다는 부자연스러운 의미가 된다. '영환 군은 빵을 먹고 술을 마셨다.'라고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④는 문법 형식 자체보다 수식·비교의 범위가 둘로 해석된다는 점이 함정이고, ⑤는 '빵과 술'이라는 병렬 구조 때문에 서로 다른 서술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식어가 어느 말을 꾸미는지, 부정·비교의 범위가 하나로 정해지는지, 병렬된 목적어가 같은 서술어와 모두 자연스럽게 호응하는지를 차례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정확한 문장은 수식 범위가 하나이고, 비교 대상이 분명하며, 목적어와 서술어가 자연스럽게 호응한다.

NoteBase

14. 다음 중 인터넷 뉴스기사의 특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기사 작성자와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성이 특징이다.
② 인터넷 기사는 심층성을 특징으로 한다.
③ 인터넷 기사는 지면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④ 인터넷 기사 작성과 편집은 비선형적 구조로 되어 있다.
⑤ 텍스트뿐 아니라 멀티미디어적 요소를 표현에 활용할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인터넷 뉴스기사의 대표적 특성인 상호작용성, 무제약성, 비선형성, 멀티미디어성과 관련이 없는 표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터넷 뉴스기사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생산·유통되는 기사로, 독자와의 상호작용, 지면 한계의 완화, 링크를 통한 선택적·비선형적 읽기, 문자·사진·음성·영상의 결합이 가능하다. 반면 심층성은 모든 인터넷 기사에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아니며, 인터넷 뉴스는 신속성과 즉시성이 두드러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 댓글, 제보, 공유, 반응 등으로 기사 작성자와 뉴스 소비자 사이에 양방향 상호작용이 가능하므로 인터넷 뉴스기사의 특성에 해당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심층성을 특징으로 한다'이다. 심층성은 모든 인터넷 기사에 공통되는 본질적 특성이 아니며, 올바르게는 인터넷 뉴스가 신속성·즉시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O — 종이신문처럼 정해진 지면 분량에 묶이지 않으므로 기사 분량과 관련 자료를 비교적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④ O — 하이퍼링크를 이용하면 독자가 정해진 순서를 따르지 않고 관련 정보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기사 작성과 편집은 비선형적 구조를 가질 수 있다.
⑤ O — 텍스트뿐 아니라 사진, 그래픽, 음성, 동영상 등 여러 매체 요소를 함께 활용할 수 있으므로 멀티미디어성이 인정된다.

오답 포인트

인터넷에 많은 정보를 실을 수 있다는 점을 곧바로 '심층성'으로 판단하기 쉽다. 저장 공간과 지면 제약이 적어 심층 보도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모든 인터넷 뉴스기사의 고유한 특징은 아니다. 이 문항에서는 ②의 '심층성'과 인터넷 뉴스의 대표적 특성인 '신속성·즉시성'을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터넷 뉴스의 특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독자 참여가 가능한지, 지면 한계가 있는지, 링크에 따라 읽기 순서가 달라지는지, 여러 매체 형식을 결합하는지를 확인한다. ‘항상 심층적이다’처럼 기사 내용의 질을 일률적으로 단정하는 표현은 대표적 매체 특성과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인터넷 뉴스는 상호작용·무제약·비선형·멀티미디어·신속성으로 정리한다.

NoteBase

15. 다음 중 기자의 취재보도 활동에서 직업윤리를 위반하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취재원의 신분을 밝히지 않기로 약속하고 취재를 했는데, 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사에서 밝혔다.
② 경제부 기자가 취재 중 얻은 기업정보를 활용해 주식투자를 했다.
③ 사인(私人)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했는데, 기사에서 사실과 어긋나는 내용은 없었다.
④ 해외 취재를 위해 취재대상기업이 제공하는 항공권을 받았다.
⑤ 어떤 유명인에 관한 비리를 보도했다. 시급하게 사안을 취재하면서 기사에 포함한 정보 중 중요한 부분은 사실이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취재·보도 과정에서 비밀 유지, 미공개 정보의 사적 이용 금지, 사실 확인, 이해충돌 회피, 신속성과 정확성의 조화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례 정리

①은 취재원 보호 약속을 어긴 사례이고, ②는 취재 중 얻은 미공개 정보를 사익에 이용한 사례이다.
③은 기사 내용이 사실과 어긋나지 않더라도 사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한 사례이며, ④는 취재 대상 기업으로부터 편의를 받은 사례이다.
⑤는 긴급한 사안에서 핵심 사실을 확인해 우선 보도했으나 세부 사항에 오류가 있었던 사례이다.

핵심 개념

기자의 직업윤리는 공익적 보도를 위해 취재원의 비밀을 보호하고, 취재로 얻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사실을 검증하고, 취재 대상과의 이해충돌을 피하도록 요구한다. 신속한 보도가 필요한 경우에도 핵심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된 세부 오류는 후속 보도로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적용 기준

행위가 취재원과의 약속을 지켰는지, 미공개 정보를 개인적 이익에 이용했는지, 명예를 훼손할 내용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취재 대상으로부터 경제적 편의를 받았는지, 긴급 보도에서 핵심 사실을 확인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직업윤리 위반)
취재원의 신분을 밝히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지켜 취재원을 보호해야 한다. 기사에 필요하다는 기자의 일방적 판단만으로 이름을 공개한 것은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다. 올바르게는 취재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원 공개가 필요하다면 먼저 취재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X(직업윤리 위반)
취재 중 알게 된 미공개 기업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면 취재 정보를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된다. 올바르게는 취재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사적 투자에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X(직업윤리 위반)
기사 내용이 사실과 어긋나지 않더라도 사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가 곧바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보도할 공익과 필요성이 있는지, 사생활과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올바르게는 공익상 필요한 범위에서 신중하게 보도하고 당사자의 반론 기회도 보장해야 한다.

④ X(직업윤리 위반)
취재 대상 기업이 제공한 항공권을 받으면 경제적 편의 때문에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올바르게는 취재 대상이 제공하는 항공권을 거절하고 취재 비용을 언론사나 기자가 독립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⑤ O(직업윤리 위반 아님)
긴급한 사안을 신속히 취재하면서 기사에 포함된 중요한 부분이 사실이었다면, 세부적인 오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직업윤리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확인된 세부 오류는 후속 보도나 정정을 통해 신속하고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⑤의 '세부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표현만 보고 정확성 원칙 위반으로 단정하기 쉽다. 그러나 이 선지는 긴급한 사안이라는 상황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이었다는 조건을 함께 제시한다. 반면 ①~④는 각각 취재원 보호, 정보의 사적 이용 금지, 사실 확인, 이해충돌 회피라는 핵심 윤리를 직접 위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자 윤리 사례는 '취재원 보호 → 사익 추구 여부 → 사실 확인 → 금품·편의 수수 → 긴급 보도의 핵심 사실 확인' 순서로 행위를 점검한다. 핵심 사실이 확인된 긴급 보도의 세부 오류와, 윤리 원칙을 직접 어긴 행위를 구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익명 약속은 지키고, 미공개 정보는 사적으로 쓰지 않으며, 명예 관련 보도는 검증하고, 취재 대상의 편의는 받지 않는다. 긴급 보도는 핵심 사실을 확인하고 세부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는다.

NoteBase

16. 다음 보도 문장 중 교열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사회악을 뿌리뽑아야 한다.
② 겉보기에 인상이 좋다.
③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많이 기록했다.
④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보았다.
⑤ 학생들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보도 문장에서 뜻이 겹치는 말을 불필요하게 반복했는지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교열은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도록 잘못되거나 불필요한 표현을 바로잡는 작업이다. 특히 한 단어에 이미 포함된 뜻을 다른 말로 거듭 나타내면 중복 표현이 되므로,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겹치는 말을 덜어 낸다.

선지별 해설

① O — '사회악을 뿌리뽑아야 한다'에서 '뿌리뽑다'는 어떤 것이 다시 생기지 못하도록 완전히 없앤다는 뜻으로, '사회악'과 자연스럽게 호응한다. 불필요한 의미 중복이 없으므로 교열 대상이 아니다.
② X — '겉보기에'와 '인상'은 모두 겉으로 보아 받은 느낌이라는 의미가 겹친다. '겉보기에 인상이 좋다'는 '인상이 좋다'로 고치는 것이 간결하다.
③ X — '여러 가지', '잡다한', '많이'가 모두 수와 종류가 많다는 뜻을 거듭 나타낸다.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많이 기록했다'는 '잡다한 것을 기록했다'로 고칠 수 있다.
④ X — '과거'에는 이미 지나간 때라는 뜻이 있으므로 '지나온 과거'는 의미가 중복된다.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보았다'는 '과거를 돌이켜 보았다'로 고친다.
⑤ X — '자각하다'는 자기 스스로 깨닫는다는 뜻이므로 '스스로'가 중복된다. '학생들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는 '학생들이 자각해야 한다'로 고친다.

오답 포인트

①의 '뿌리뽑다'를 과장된 표현으로 보아 고치려 하기 쉽다. 그러나 이 말은 '완전히 없애다'라는 뜻으로 '사회악'과 정상적으로 호응한다. 반면 ②~⑤는 같은 뜻을 가진 요소가 실제로 겹쳐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말을 하나씩 빼도 원래 의미가 그대로 남는지 확인한다. 빠진 뜻이 다른 단어에 이미 들어 있다면 중복 표현이므로 교열 대상이고, 고유한 의미를 담당하며 문맥상 자연스럽다면 교열 대상이 아니다.

암기 포인트

지나온 과거·스스로 자각은 중복이고, 사회악을 뿌리뽑다는 자연스러운 결합이다.

NoteBase

17. 다음 중 언론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① 사실이 적시되어야 하며, 대상자의 사회적 평가를 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형량이 가중된다.
②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③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는 부족하지만,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으로 여겨질 때에는 면책된다.
④ 명예훼손죄에서 훼손의 의미는 살아있는 사람뿐 아니라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해당된다.
⑤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공인인가 사인인가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적용이 달라진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성립 범위와 위법성 조각 요건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보도 내용이 진실한 경우와 진실하다고 믿은 경우의 요건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명예훼손 = 사람이나 단체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행위이다.
위법성 조각 = 형식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공익성·진실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핵심 구분

공공의 이해에 관한 보도가 주로 공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면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도자가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까지 있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도 언론보도에 관하여 공익 목적,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를 위법성 조각의 판단 기준으로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대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을 때 성립한다. 허위사실 적시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보다 형사책임이 무겁게 규정된다.

② O
법인도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이라는 객관적 평가를 가지므로 명예훼손의 피해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X
진실이라고 단순히 믿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며 주된 목적도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틀린 표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는 부족하지만,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으로 여겨질 때에는 면책된다.
올바른 표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주로 공익을 위하여 보도한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④ O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형법상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민사상으로는 유족 자신의 명예나 망인에 대한 경애·추모감정의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⑤ O
원고가 공인인지 사인인지에 따라 표현의 공공성, 감시·비판의 필요성, 사생활 보호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명예훼손 책임의 판단 기준과 적용 강도도 달라질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의 함정은 공익 목적만 있으면 부정확한 보도도 곧바로 면책된다고 보는 데 있다.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주관적 사정과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라는 객관적 사정은 서로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언론보도의 면책 여부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지, 주된 목적이 공익인지, 사실이 진실한지의 순서로 판단한다.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취재·확인 과정에 비추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추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공익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NoteBase

18. 다음의 취재 준칙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 등의 취재 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들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

② 병원 등의 취재 시, 기자의 신분을 밝힌다면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 지역에 들어가서 취재할 수 있다.

③ 기자는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여 취재해서는 안 된다.

④ 전자정보나 영상물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⑤ 전화 취재 시 먼저 신분을 밝혀야 하며, 취재원이 취재요청을 거절할 경우, 취재수락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취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신분 공개, 취재원 존중, 비공개 구역 출입, 위장 취재, 자료 취급의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취재 윤리는 취재의 필요성만으로 타인의 인격권·사생활·재산과 장소의 출입 통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기자가 신분을 밝혔다고 해도 비공개 구역에 들어갈 권한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출입 허락을 받아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재난·사고 현장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희생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기자의 신분을 밝힌다면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 지역에 들어가서 취재할 수 있다'이다. 신분 공개는 취재 목적을 알리는 절차일 뿐 비공개 구역의 출입 허가를 대신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기자 신분을 밝혔더라도 병원 측이나 해당 권한자의 허락 없이 입원실 등 비공개 구역에 들어가 취재해서는 안 된다.

③ O — 취재를 위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직업인 것처럼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말로 상대를 속이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O — 전자정보나 영상물을 소유주 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며, 제시된 준칙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 가능성을 인정한다.

⑤ O — 전화 취재에서도 먼저 기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며, 취재원이 요청을 거절하면 취재 수락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신분 공개’와 ‘출입 허가’를 같은 것으로 보이게 만든 선지이다. 기자임을 밝히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입원실 같은 비공개 장소에 출입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취재 준칙 선지에서는 취재 목적의 정당성과 취재 수단의 정당성을 따로 판단한다. 신분을 밝혔는지와 함께 출입 허가를 받았는지,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존중했는지, 타인의 인격·치료·자료 관리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신분 공개는 기본이고, 비공개 구역 출입에는 별도의 허락이 필요하다.

NoteBase

19. 다음 중 주요 통신사와 소속 국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AP - 미국
② 로이터 - 영국
③ AFP - 프랑스
④ UPI - 독일
⑤ 이타르타스 - 러시아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주요 국제 통신사와 그 통신사가 속한 국가를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통신사는 국내외 뉴스를 취재하여 신문사·방송사 등 여러 언론사에 공급하는 조직이다. 주요 연결은 AP·UPI는 미국, 로이터는 영국, AFP는 프랑스, 이타르타스는 러시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AP는 미국의 통신사이므로 연결이 옳다.
② O — 로이터는 영국의 통신사이므로 연결이 옳다.
③ O — AFP는 프랑스의 통신사이므로 연결이 옳다.
④ X — 'UPI—독일'이라는 연결이 틀렸다. UPI는 미국의 통신사이므로 'UPI—미국'으로 고쳐야 한다.
⑤ O — 이타르타스는 러시아의 통신사이므로 연결이 옳다.

오답 포인트

AP와 UPI가 모두 미국 통신사라는 점을 놓치고, UPI를 독일 통신사로 혼동하도록 만든 ④가 함정이다. 문제의 부정 표현인 '옳지 않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통신사 이름을 국가와 일대일로 대조한다. AP·UPI는 미국, 로이터는 영국, AFP는 프랑스, 이타르타스는 러시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미국은 AP·UPI, 영국은 로이터, 프랑스는 AFP, 러시아는 이타르타스이다.

NoteBase

20. 보도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처사진은 뉴스의 중요성은 크지 않지만 인간적 흥미를 자아내는 사진을 말한다.

② 일러스트레이션은 추상적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사진을 인위적으로 합성한 것도 포함한다.

③ 크라핑(Cropping)은 사진의 요소 가운데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를 잘라낸 것을 말한다.

④ 구도는 사진의 프레임 속에 어떠한 요소를 포함할 것이며 이 요소들을 어떻게 배열하여 사진의 전체적인 모습을 결정할 것인지에 관한 원칙이다.

⑤ 캡션은 보도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방법에는 비례법, 선투시도법 등이 있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보도사진의 주요 유형과 편집 개념인 피처사진, 일러스트레이션, 크라핑, 구도, 캡션의 뜻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피처사진: 뉴스의 긴급성이나 중대성보다 인간적 흥미와 일상적 이야기를 강조한 사진이다.

일러스트레이션: 추상적 생각이나 주제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연출·합성 등의 표현을 활용한 사진을 포함한다.

크라핑: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 내고 핵심 요소를 강조하도록 화면 범위를 조정하는 작업이다.

구도: 프레임에 포함할 요소와 그 배치를 정하여 사진의 전체 모습을 구성하는 원리이다.

캡션: 보도사진의 인물·사건·장소·시점 등 사진만으로 알기 어려운 사실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보충하는 설명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피처사진은 뉴스의 중대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더라도 사람의 감정과 관심을 끄는 인간적 흥미를 중심으로 한다.
② O — 사진 일러스트레이션에는 추상적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기 위해 여러 사진 요소를 인위적으로 결합한 합성 표현도 포함된다.
③ O — 크라핑은 사진의 일부를 잘라 불필요한 요소를 덜어 내고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편집 작업이다.
④ O — 구도는 프레임 안에 어떤 요소를 넣고 어떻게 배치할지를 정하여 사진의 전체적인 시각 구조를 만드는 원리이다.
⑤ X — 틀린 부분은 '캡션의 방법에는 비례법, 선투시도법 등이 있다'이다. 비례와 선투시는 화면의 공간감과 요소 배치를 다루는 구도·시각 표현 원리이지 캡션 작성 방법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캡션은 보도사진의 내용을 보충하는 설명문으로, 사진 속 인물·사건·장소·시점 등 필요한 사실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제시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⑤의 앞부분인 '보도사진에 대한 설명'은 맞지만, 뒤에서 비례법과 선투시도법을 캡션의 방법으로 연결한 것이 함정이다. 캡션은 글로 정보를 보충하는 설명이고, 비례와 투시는 사진 화면을 조직하는 시각 표현 원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용어가 사진의 내용을 글로 보충하는지, 화면을 자르는지, 프레임 안의 요소를 배치하는지를 먼저 구분한다. 글로 사실을 설명하면 캡션, 일부를 잘라 강조하면 크라핑, 요소의 선택과 배치를 정하면 구도에 해당한다.

암기 포인트

캡션은 글 설명, 크라핑은 잘라 내기, 구도는 프레임 안의 선택과 배치이다.

NoteBase